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
----------	----

제출년월일 : 2019. 2.

제 출 자 :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안 제19조)
- 나.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2조)
- 다.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21조의3)
- 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 등(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전문: 별첨
 - (2) 입법예고(2019. 1. 23. ~ 2019. 1. 24.)결과: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원안동의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비밀로서”를 “비밀로”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을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으로, “근무에 관하여”를 “원격근무자의 근무에”로, “별도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근무시간 등의 변경과 연장)”을“(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추어”를 “따라”로, “바꾸거나 늘릴”을 “변경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을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 6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을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정직·직위해제 또는 강등처분으로”를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연가 당겨쓰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9조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별표4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2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월”을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1월”을 “1개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을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2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제24조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생후 71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

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7조를 삭제하고, 제28조를 제27조로 하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제19조, 제25조제4항·제5항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따른다.

제29조제2호 중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로, “기업체(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을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중 “그 밖의 다수인”을 “그 밖에 다수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위와”을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으로 한다.

별표 3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
----	-----	----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0조, 제24조, 제25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2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연가 당겨쓰기(제21조의2 관련)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별표 5]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8조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구청장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4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병가

가. 구청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별표 6]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2. (생략)</p> <p>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u>비밀로서</u>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제7조(근검절약 등) ① <u>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u></p> <p>② <u>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u></p> <p>제14조(근무시간 등) ① ~ ③ (생략)</p> <p>④ <u>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제5조(비밀엄수)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4. -- <u>밖</u>에 ----- ----- ----- <u>비밀로</u> ----- -----</p> <p><삭 제></p> <p>제14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u>----- ----- <u>원격근무자의 근무에</u> ----- <u>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u> <u>따로</u>-----.</p>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과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생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

----- 따라 ----- 변경할 -----.

②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원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20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제19조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정직·직위해제 또는 강등처분으

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 6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20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3. (생략)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1. (생략)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략)

·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 -----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3.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4항-----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삭 제>

제21조의2(연가 당겨쓰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9조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별표4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제22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연도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②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2조(연가일수 공제) ① -----

-----.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x 해당연도 연가일수
<신 설>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 1개월-----
-----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신 설>

<신 설>

③·④ (생략)

제2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4항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3조(병가) ① -----

----- 제22조제7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24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 10.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공가) -----

-----.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8. ~ 10. (현행과 같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5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⑤ (생략)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 ⑩ (생략)

⑪ (생략)

제25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생후 71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난임치료 -----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소속기관의 장은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1일을 가산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

제2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
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 (생 략)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
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
득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

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삭 제>

제28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
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
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
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
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
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
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제19조, 제25조제4항
·제5항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별
표5에 따른다.

제27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

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생략)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4. (생략)

제31조(정치적 행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또는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깃발·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

----.

1. (현행과 같음)

2.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 사기업체 (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

3.·4. (현행과 같음)

제31조(정치적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의
다수인-----

4. -----

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산	배우자	5
----	-----	---

<신 설>

<신 설>

-----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산	배우자	10
----	-----	----

[별표 4] 연가 당겨쓰기(제21조의2 관련)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지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별표 5]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8조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구청장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4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병가

가. 구청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별표 6]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예산증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현행	개정 후	비고
세입		0	0	
	소계(a)	0	0	
세출		0	0	
	소계(b)	0	0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a-b)		0	0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 증감내역 산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총무과장 양건모 (☎ 02-3425-7112)